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180호

2025년도 클라우드 종합솔루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제조분야)

스마트공장 기술공급기업(제조솔루션 서비스기업)의 질적 성장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2025년도 클라우드 종합솔루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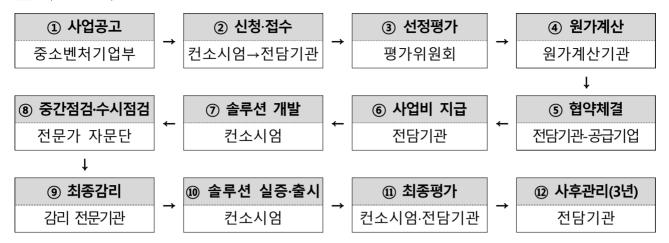
- 업종별 스마트화에 요구되는 제조솔루션을 지속적인 기능 연계·추가·개선이 가능하도록 클라우드 및 패키지 형태로 개발 지원
- 제조솔루션을 공용 클라우드 환경에서 활용가능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aaS*)형태의 솔루션 개발 및 출시
 - *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Service) :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 지원내용

(지원내용) 기존 중소 공급기업이 보유·사업화 중인 제조 솔루션을 공용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가 가능한 제조솔루션(SaaS형) 개발 지원(SW → SaaS 전환) (신청대상) 신청 마감일 기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국내 중소 공급기업(컨소시엄 구성필요) (지원내용) 업종별 대표 또는 생산공정에 적용가능하고, 사회·정책이슈대응이 가능한 다수 제조솔루션이 연계·통합된 종합솔루션 개발 지원 (신청대상) 신청 마감일 기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국내 중소·중견 공급기업(컨소시엄구성필요)	사업분야	주요내용		과제당 지원규모
(신청대상) 신청 마감일 기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국내 중소 공급기업(컨소시엄 구성 필요) (지원내용) 업종별 대표 또는 생산공정에 적용가능하고, 사회·정책이슈대응이 가능한 다수 제조솔루션이 연계·통합된 종합솔루션 개발 지원 (신청대상) 신청 마감일 기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국내 중소·중견 공급기업(컨소시엄 구성 필요)	6 33055	솔루션을 공용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가 가능한 제조	٦	0 - 01 01
사회·정책이슈대응이 가능한 다수 제조솔루션이 연계·통합된 종합솔루션 개발 지원 (신청대상) 신청 마감일 기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국내 중소·중견 공급기업(컨소시엄 구성 필요)	♥ 들다누느와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국내 중소 공급기업(컨소시엄 구성	5	2.5 익권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국내 중소·중견 공급기업(컨소시엄 구성 필요)		사회 정책이슈대응이 가능한 다수 제조솔루션이 연계 통합된		
코크리어 중 중 . 리어 된어! 피시 중리리어 티드 된어! 티키	② 종합솔루션화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국내 중소·중견 공급기업(컨소시엄	1	8억원

- (클라우드화) 기존 중소 공급기업이 보유·사업화 중인 SW솔루션을 공용 클라 우드 환경에서 서비스가 가능한 제조솔루션(SaaS형) 형태로 개발 지원
 - 클라우드 서비스 설계·구현·시험 등 SaaS 개발 필요 비용* 지원
 - * 인건비(전문인력 고용), 인프라 활용료, 외부 인증기관 시험비, 클라우드·산업계 전문가 컨설팅·자문 비용 등
- (종합솔루션화) 업종별* 대표 또는 생산공정에 적용가능하고, 사회·정책이슈** 대응이 가능한 다수 제조솔루션이 연계·통합된 종합솔루션*** 개발 지원
 - * 업종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중분류 제조업(C10-34) 코드에 해당하는 업종(25개)
 - ** AI, 공급망 재편·리쇼어링, 국제 무역규제, 외국인 인력대응 등의 국내외 사회정책이슈
- *** 제조기업이 제조 관련 솔루션(MES, ERP 등) 또는 단위 기능업무(생산공정, 자재관리 등) 솔루션 기준으로 필요 솔루션을 추가, 제외할 수 있는 솔루션 통합화
 - 필수 솔루션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시장분석을 통한 업종별 중소 제조기업 수요에 맞는 최소 3종 이상이 통합된 패키지형 종합솔루션 개발
- □ 지원규모 : 클라우드화 5개 및 종합솔루션화 1개 과제
 - (클라우드화) 개발기간 내 최대 2.5억원(총사업비 50% 이내), 5개 과제 정부지원
 - **(종합솔루션화)** 개발기간 내 최대 8억원(총사업비 50% 이내), 1개 과제 정부지원
 - ※ ① 민간자부담금은 최대 20% 이내로 현물부담이 가능하며, 자부담금(총사업비 50% 이상)은 컨소시엄내 자율 배분·부담
 - ②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내 연장 가능
- □ 지원기간 : 개발기간 최대 8~12개월*(개발 후 솔루션 실증 필수, 실증기간 내 지원 無)
 - * (클라우드화) 개발 8개월 및 실증 4개월 / (종합솔루션화) 개발 12개월 및 실증 6개월

□ 추진절차



□ 추진역할

< 기관별 주요역할 >

구분		주요 역할
	소벤처기업부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전담 기관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	- 평가위원회 등 구성·운영 - 협약체결.변경, 사업비 지급, 사후관리 등 - 원가계산기관, 감리기관, 전문가 자문단 운영 · (원가계산기관) FP산정법에 의거 원가계산 · (감리기관) 소프트웨어 감리기준에 따라 솔루션 점검 및 시정조치 · (전문가자문단) 솔루션 사전 테스트 및 오류·취약점 분석 등
컨소 시엄	공급기업	-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솔루션 개발 운영지원 등 · (대표공급기업) 솔루션 개발 총괄 및 운영지원, 사업비 관리 및 컨소 시엄내 협약관리, 민간부담금 대응 총괄 등 · (참여공급기업) 대표공급기업과 협력, 솔루션 개발 참여, 민간부담금 대응 협조 등
	클라우드 사업자	- 개발환경 제공, 교육, 컨설팅, 민감부담금 대응 협조 - 개발 솔루션의 마켓플레이스 출시 지원 등
	도입기업(실증)	- 솔루션 실증 참여 및 개선의견 제공
	협력기관	- 솔루션 개발 기술지원, 실증지원, 지방비 매칭 지원, 사업 홍보 등

2. 세부내용

□ (공통) 요청사항

- ① (신청 자격) 제조솔루션 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 신규 공급기업 Pool 등록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최소 신청마감일 2주 전에 신청 필요
 -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알림/참여 마당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 ② (표준 의무화) 개발단계에서 AAS(IEC 63278-1) 및 OPC-UA(IEC 62541)의 국 제표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핵심 공정·장비의 표준 참조모델을 활용하여 제조데이터 표준기반 솔루션 개발 필수
 - □ 반드시 공용 클라우드에서 활용가능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형태의 솔루션 개발 필요
- ③ (솔루션 실증) 사업신청 시 컨소시엄 내 실증 도입기업 모집은 필수(클라우드화 1개사 이상, 종합솔루션화 5개사 이상)이며, 솔루션 개발 완료평가 전까지실증 도입기업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
 - 사업계획서 내 실증계획 및 성과지표 구체적 명시 필요
- ④ (솔루션 출시) 솔루션 개발 및 실증·보완과정을 거쳐 솔루션을 출시하면, 반드시 공용 클라우드에서 활용가능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형태의 솔루션 출시 필수(솔루션 출시 조건 미이행 시 실패판정)
 - < 솔루션 출시 인정 기준(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 클라우드사업자의 보안 요구사항 준수, SW 저작권 등 솔루션 유통에 문제가 없을 것
 - ·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용 클라우드에 출시될 것
 - · 솔루션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 누구나 솔루션 다운로드 및 활용이 가능할 것
 - ※ 클라우드사업자의 별도 검증 절차가 있을 경우 이를 통과해야 함
- ⑤ (사업화 검증) 사업 최종평가 시까지 모든 도입기업(실증)의 솔루션 구매(구독) 계약서 제출 필수
- ⑥ (사후관리) 최종평가 후 1년 내 도입기업(클라우드화 1개사 이상, 종합솔류션화 5개사 이상)으로부터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SaaS형 솔루션에 대한 매출 실적 발생 필수(사후관리를 통해 검증 예정)

□ 클라우드화

- (신청자격) 공급기업이 주관(대표)하여 구성한 컨소시엄
 - * 신청 마감일 기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컨소시엄 구성	주요역할 및 자격	구분
공급기업	· 기존 보유한 구축형 SW를 SaaS로 전환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 제조솔루션 기업*** 국내 중소·중견 공급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필수
클라우드 사업자	· 클라우드형 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를 위한 PaaS*제공이 가능한 클라우드 사업자 * 서비스로서의 플랫폼(PaaS: Platform as a Service): 솔루션 개발, 판매, 사업화 등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보유한 클라우드 사업자 필수 참여	필수
도입기업(실증)	· 개발된 솔루션의 실증에 참여할 제조 중소기업 1개사 이상 * 솔루션 개발 완료전까지 변경 가능(전담기관 승인 필요)	필수

- **(지원기간)** 2025. 6 ~ 2026. 2 (8개월)
- (지원규모) 총 12.5억원 (총 5개 과제, 과제당 2.5억 이내 지원)
- (평가기준)

구분	평가기준	배점(예)
공급기업 역량	· 기업 현황(재무성과, 개발성과 등)이 양호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인가? · 기존 SW의 성과(고객수, 스마트공장 보급 등)가 양호한가? · 투입 인력의 전문성 및 투입규모의 적정성 등이 양호한가?	20
방향 및 목적성	· 개발 SaaS형 솔루션의 사업방향 및 목적을 적절히 제시하였는가? · 해당 업종의 수요를 적절하게 파악하는 등 사전준비가 구체적인가? · 기존 SW → SaaS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는가?	20
솔루션 개발 계획	· 기존 SW → SaaS 전환시,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가? · 솔루션 개발목적에 부합하는 솔루션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개발된 SaaS형 솔루션의 실증 계획을 적절히 제시하였는가?	30
사업경쟁력 확보	· 솔루션의 국내 및 글로벌 확산을 위한 실현가능 계획 [†] 이 수립되었는가? · 지속가능한(서비스-이윤창출-기능개선) B/M이 수립되었는가? · 핵심성과지표의 달성(솔루션을 통한 성과 달성) 가능성이 있는가?	20
프로젝트 관리 능력	·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일정·관리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 SaaS 확산을 위해 역량있는 클라우드 사업자가 참여하였는가?	10
합계		

○ (추진체계)



□ 종합솔루션화

- (신청자격) 공급기업이 주관(대표)하여 구성한 컨소시엄
 - * 신청 마감일 기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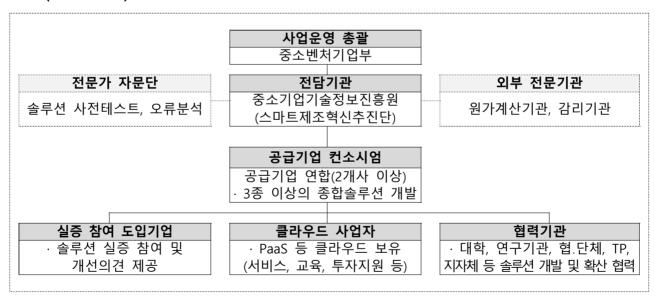
컨소시엄 구성	주요역할 및 자격	구분
공급기업	· 국내 중소·중견 공급기업(IT서비스기업)* 2개사 이상** * 국내 중소·중견 공급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1개사 이상 중소 공급기업 필수 참여 · 제조 관련 솔루션 3종 이상을 종합·패키지화	필수
클라우드 사업자	· 클라우드형 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를 위한 PaaS*제공이 가능한 클라우드 사업자 * 서비스로서의 플랫폼(PaaS: Platform as a Service): 솔루션 개발, 판매, 사업화 등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보유한 클라우드 사업자 필수 참여	필수
협력기관	· 솔루션 개발 및 확산과 관련하여, 솔루션 개발 기술지원 등이 가능한 기관 * 대학, 연구기관, 협.단체, TP, 지자체 등	선택
도입기업(실증)	· 개발된 솔루션의 실증에 참여할 제조기업 5개사 이상 (도입기업 중 중소기업 3개사 이상 필요) * 솔루션 개발 완료전까지 변경 가능(전담기관 승인 필요)	필수

- **(**지원기간**)** 2025. 6 ~ 2026. 6 **(**12개월**)**
- **(지원규모)** 총 8억원 이내 (총 1개과제)

○ (평가기준)

구분	평가기준	배점
사업화 가능성	· 솔루션의 국내 및 글로벌 확산이 가능한가? · 지속가능한(서비스-이윤창출-기능개선) B/M이 수립되었는가? · 핵심성과지표의 달성(솔루션을 통한 성과 달성) 가능성이 있는가?	25
컨소시엄 역량	· 공급기업 현황(개발이력 등)이 양호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 · 공급기업이 SaaS형 서비스 개발 및 운영 이력이 있는가? · 솔루션 확산을 위해 역량있는 클라우드사업자가 참여하였는가?	25
사전준비의 철저성	· 업종의 수요를 적절하게 파악하였는가? · 사전준비가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 장기적으로 성장이 유망한 업종 및 생산품을 대상으로 하는가?	15
솔루션의 우수성	 개발 솔루션이 기존 솔루션 대비 우수한가? 개발된 솔루션이 대상 업종의 스마트화에 기여 가능한가? 핵심성과지표(제조기업의 요구에 부합되는 성과) 설정이 타당한가? 	20
개발 및 실증 계획	수요조사에 대응하는 솔루션 개발 계획이 수립되었는가?실증을 위한 클라우드사업자의 지원계획이 적절한가?컨소시엄 구성 및 업무분장이 적절한가?	15
	합계	100

○ (추진체계)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4월 1일(화) ~ 4월 16일(수) 17시까지
- **(사업설명회)** 2025년 3월 19일(수) 14시(예정)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세종)
 - * 자세한 일정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 공지 예정
- **(신청방법)** 대표 공급기업이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권한신청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공급기업) → 회원정보 → 권한신청 (신청권한을 도입기업으로 선택 및 권한신청) → 권한승인(전담기관)
 - 사업신청 : 로그인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구분		제출 서류
1	공통	- 사업계획서 1부 - 참여기업 확인서(컨소시엄 참여기업) 1부 * 클라우드사업자의 경우 대표 공급기업(IT서비스기업)과 파트너사 계약 또는 협약 등의 서류 제출시에도 참여로 인정 - 개발 및 사업화 실적 증빙 자료(해당 시, 자유 양식)
2	공급기업 및 클라우드 사업자	※ 컨소시엄 참여기업 모두 제출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기업규모 구분 관련 증빙 각 1부(기업별 중소기업확인서/중견기업확인서) - 표준재무제표증명('24년) 1부(전년도 결산보고서가 없을 시, '24 가정산서 및 최근년도 '23 결산보고서 제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 (클라우드사업자) CSAP 인증서 1부
3	도입기업 (실증참여기업)	 ※ 실증대상 기업 모두 제출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4	협력기관	 ※ 협력기관 있을 시 참여하는 모든 협력기관에서 제출 필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 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4. 선정절차 및 방법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및 방법 등은 신청과제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변동 될 수 있음

□ 선정절차

- 스마트공장, IT, 클라우드 관련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5인 내외)를 구성하여 컨소시엄 역량, 방향 및 목적성, 솔루션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 으로 평가하여 지원대상 선정
 - * (1차 서면평가) 발표평가 대상 컨소시엄 선정 → (2차 발표평가) 최종 지원기업 선정
 - ** 신청 컨소시엄이 5개 미만일 경우 서면평가 생략 후, 발표평가 진행
 - < 세부 평가 방침 및 동점시 처리방침 >
- · 발표 및 서면평가시 최대점·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 · 발표평가 대상은 지원 대상 컨소시엄의 5배수(5개 컨소시엄)를 기준으로 하며,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서면평가 시의 5배수에 해당하는 동점자는 전부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
- · 최종 지원대상은 발표평가를 통해 평가점수(가점 포함)가 60점 이상이면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을 진행하되, 발표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사업화가능성 및 컨소 시엄 역량, 솔루션의 우수성 순)에서 점수가 높은 컨소시엄을 선정
- * 클라우드사업자 참여불가 또는 사업 착수 후 불성실 수행 및 당초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시, 후순위의 사업 참여를 위해 선정된 사업참여자 외 2개사를 예비 사업참여자로 선정

□ 지원제외대상

ㅇ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① 휴·폐업중인 기업

- ②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③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④ 최근 3년이내에 스마트제조혁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제재 조치를 받은 기업
- * 공급기업, 클라우드 사업자, 도입기업, 협력기관 등 컨소시엄내 참여기업 모두 해당

5. 참고사항

□ 대상 업종

- 사업자등록증명원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중분류 제조업(C10~34) 코드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함
 - 해당 중분류 내 소분류 및 세분류를 대상으로 할 수 있음

코드	업종명	코드	업종명
10	식료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12	담배 제조업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33	기타 제품 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제조 관련 솔루션

단위모듈	설명
MES	·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 제조실행시스템, 제품의 주문을 받고 난후 제품이 완성될때까지 생산의 최적화를 위한 정보를 제공
ERP	·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기업자원관리, 재무/회계, 자재/구매, 품질, 생산, 설비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SCM	· SCM(Supply Chain Management) - 공급사슬관리, 물건과 정보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이동하는 전 과정을 관리
PLM	·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 - 제품수명주기관리, 제품 설계도로부터 최종 제품 생산에 이르는 전체과정을 일관적으로 관리
FEMS	·FEMS(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시스템, 생산 및 시설 유지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모니터링, 분석, 제어
:	· 업종별 특화모듈(예시 : 식품업종 스마트HACCP 등), AI적용 등 * 상기 외 업종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기능 추가 가능

* 예시) MES모듈 구독 후 추가적으로 에너지 관리가 필요시 FEMS모듈을 추가 구독하여, MES모듈과 FEMS모듈을 연동하여 활용 가능

□ 단위 업무 관련 솔루션

기능 모듈명				
기준정보관리	품질관리	시스템 관리		
수발주·물류	검사관리	통계관리		
영업관리	에너지관리	외부시스템 대응		
공정관리	계측기관리	인사·재무관리		
재고관리	탄소배출관리	경영관리		
장비관리	모니터링 관리	업종별 특화기능		
설계관리	데이터 관리	제품별 특화기능		
생산관리	데이터 분석	AI 적용 특화기능		
• • •	* 상기 외 업종의 요구사형	을 반영한 기능 추가 가능		

^{*} 예시) 생산관리 모듈 구독 후 추가적으로 에너지 관리가 필요시 에너지 관리 모듈을 추가 구독하여, 생산관리 모듈과 에너지관리 모듈을 연동하여 활용 가능

6. 문의처

구분	담당기관	문의사항	전화
사업 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시행계획 수립·총괄	044-204-7272
사업 관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제조데이터전략실)	신청·접수, 과제평가, 정산·환수 등 사업집행	044-300-0945
접수 시스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제조데이터전략실)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접수 등 시스템 관련 문의	044-998-0418

☞ 관련 웹사이트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https://www.smart-factory.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s://www.mss.go.kr